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6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 자문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나.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내부위원 증가로 위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2조제1항)

다. 시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라. 내부위원을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물순환안전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공동위원장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함 (안 제22조제4항)

바. 물순환 시민위원회 기능 보좌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실무 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 **※ 개선의견**
>
> ○ 성별균형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시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문구 필요
>
> **※ 개선의견 반영 결과**
>
> ○ 반영 :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문구 추가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9. 1. ~ 9 . 21.)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팀 이두환 (☎ 2133-376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40명”을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외부위원은”으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물순환안전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인 및 물순환안전국장”을 “1명 및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성) ① ---------- 45명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물순환안전국장(이하 "내부위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
③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 및 물순환안전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 1명 및 행정2부시장----------.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7조(분과위원회) ①·② (생 략)	제27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물순환 시민위원회는 국장급 위원회로서 물순환의 총괄적이 정책가이드에 어려움이 있어 현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시키고 내부위원을 증가 시키는 사안으로 비용의 추가 지출은 없으며

○ 분과위원회별 실무연구단 15명을 두어 정책개발 등에 따른 참석 수당 지출이 증가되며 연 2천만 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평균 5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물순환정책과 이두환(☎ 2133-3761)